

ORIGIN CASE

Vol. 3



- Case 1 자동차용 전면유리 세정 펌프 (제8413.70호)
- Case 2 시즈닝 솔트 (제2103.90호)
- Case 3 냉동 비건 베이컨 (제2106.90호)
- Case 4 참치 대용 식물성 단백질 (제2106.90호)
- Case 5 대추야자 설탕 분말 (제1106.30호)
- Case 6 가공된 황다랑어
- Case 7 크릴오일 구미 (제2106.90호)
- Case 8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
- Case 9 껌 (제2106.90호)
- Case 10 혼합감미료 (제2106.90호)



한국원산지정보원

CONTENTS

Case 1.	자동차용 전면유리 세정 펌프 (제8413.70호)	1
Case 2.	시즈닝 솔트 (제2103.90호)	7
Case 3.	냉동 비건 베이컨 (제2106.90호)	12
Case 4.	참치 대용 식물성 단백질 (제2106.90호)	17
Case 5.	대추야자 설탕 분말 (제1106.30호)	22
Case 6.	가공된 황다랑어	27
Case 7.	크릴오일 구미 (제2106.90호)	31
Case 8.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	36
Case 9.	껌 (제2106.90호)	40
Case 10.	혼합감미료 (제2106.90호)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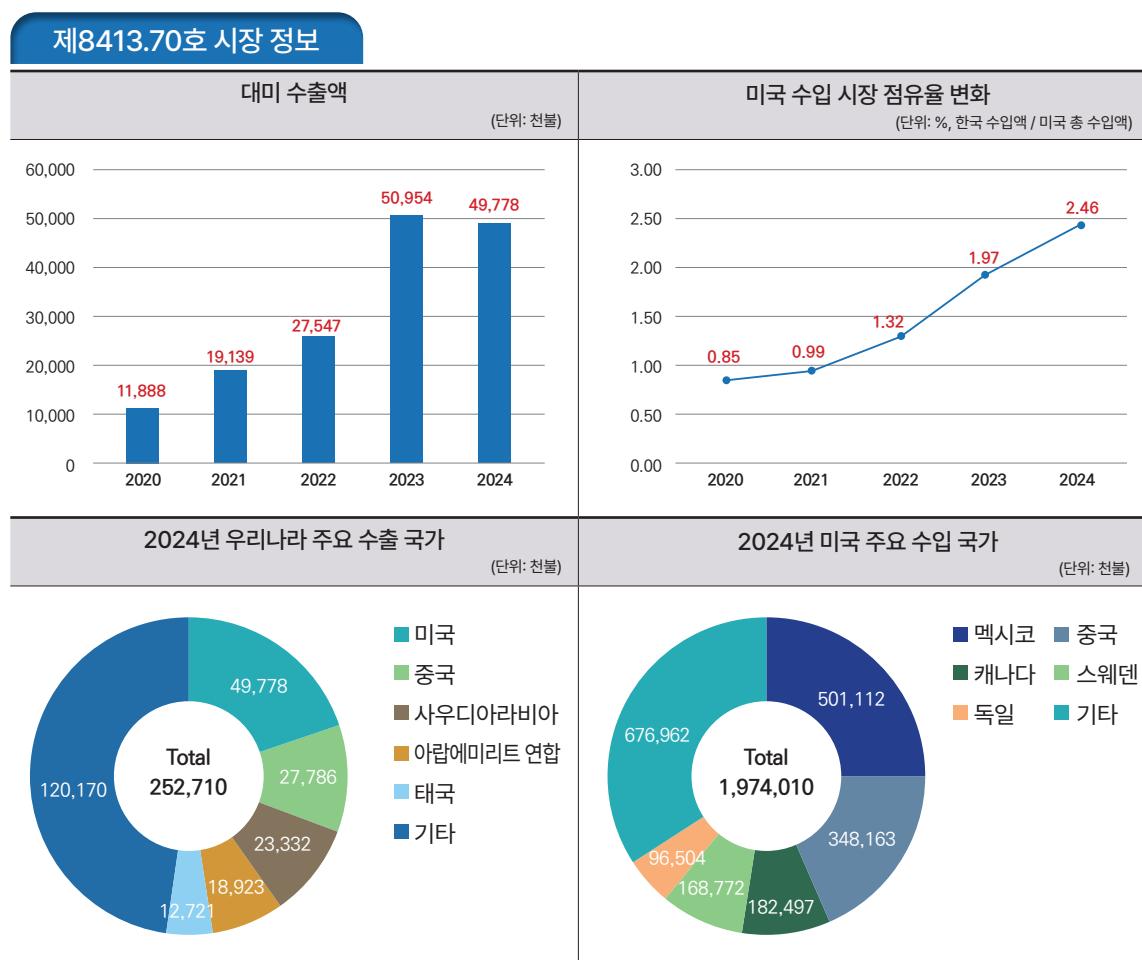
자동차 전면유리 세정 펌프

요약

사례명	자동차용 전면유리 세정 펌프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HQ H303866 (2020.02.13.)
사실관계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부품을 멕시코에서 가공·조립(모터 하우징, 아마추어, 모터 엔드캡 제작, 조립 및 최종 제품 생산)하여 생산된 자동차용 전면유리 세정 펌프를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p> <p>다양한 국가에서 부품이 수입되었으나,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은 사출성형, 납땜, 기계 가공, 압착 고정 등 다양하고 복잡한 공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 부품은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되었다고 판정하여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멕시코산으로 판정함 (제301조 미적용)</p>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413.7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례명 [자동차용 전면유리 세정 펌프]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HQ H303866 (2020.02.13.)

사실관계

요청자 Thomas M.Keating (대리인: Rock Trade Law LLC)

제품	제품명	• 자동차 전면유리 세정 펌프 (제품번호: 1999-1WP0055EP)
	구성	• 멕시코산(약 50%), 중국산(약 33%), 일본/미국 등 기타 국가산(나머지)
	용도	• 자동차 전면유리 세정 시스템용 원심 펌프 장치
	완제품 HTSUS	• 8413.70.20

제조공정



멕시코 상세공정

모터 하우징(스테이터) 생산

- 일본산 강판 스트립을 가공하여 모터 하우징 형태로 성형
- 하우징에 중국산 부싱을 공압 프레스로 삽입
- 중국산 페라이트 바와 스프링을 하우징에 고정 배치
- 모터 하우징 세척
- 자체 형성 기계에 모터 하우징 서브어셈블리를 넣어 페라이트 바 자화

아마추어(로터, 회전자) 생산

- 일본산 강판을 가공하여 라미네이션 시트(적층판) 제작
- 중국산 샤프트 표면 미끄럼 방지 가공 처리
- 라미네이션 시트 쌓은 후 공압 프레스로 샤프트를 적층된 라미네이션 중앙에 삽입
- 에폭시 분말 분사 후 가열하여 경화를 통한 절연 처리 수행
- 중국산 정류자(Commutator) 장착 및 에폭시 접착 후 경화
- 멕시코산 절연 구리 와이어를 적층체 주위에 감고 정류자에 영구적으로 용착

7. 전기 저항 테스트 및 밸런싱 조정, 정류자 표면 가공 등 정밀 공정 수행
8. 세척 및 중국산 플라스틱 슬링거, 와셔 장착
9. 최종 전기 테스트

모터 엔드캡 제작

1. 미국산 열가소성 수지를 사출 성형하여 플라스틱 캡 제작
2. 여러 부품(부싱, 리테이너 링, 브러시, 단자 등)을 가공 조립하여 엔드캡 제작
3. 진공 청소로 이물질 제거 및 육안 검사

모터 어셈블리 최종 조립

1. 위 세 가지 하위 조립체를 정렬·삽입하여 모터 완성
2. 부하 등 성능·시각·작동 테스트 수행

펌프 최종 조립

1. 중국산 열가소성 수지로 펌프 하우징, 중국산 활동 단자로 커넥터 성형, 일본산 수지로 임펠러 사출성형
2. 모터와 펌프 부품 결합 조립(커넥터에 모터 압입, 중국산 고무 씰 부착, 임펠러 압입 등)
3. 최종 성능 및 누수 테스트, 육안 검사 및 라벨링 후 완제품 완성

쟁점사항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USTR은『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중국산 특정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제301조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을 사용

- 실질적 변형: 제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CBP는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 정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을 고려해 사례별 (case-by-case)로 판정을 내리며, 이때 핵심 판단 요소는 수행된 작업의 범위, 원재료가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 구성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573 F. Supp. 1149 (Ct. Int'l Trade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관련 법령 및 분석

- 경미하거나 간단한 조립 작업은 복잡하고 의미 있는 조립 작업과 달리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때 관련되는 요소들로는 ①작업의 성격(조립되는 부품의 수 포함), ②작업 단계의 다양성, ③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④숙련된 기술, ⑤작업의 디테일, ⑥품질 관리 등이 있음

❖ 참고 판례: *C.S.D. 80-111, 85-25, 89-110, 89-118, 90-51, 90-97*

-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CBP는 해당 사례에서 실질적 변형의 판단을 위해 HQ H282391 및 HQ H303529 사례를 인용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82391 (2017.03.16.)*

사례 여러 국가에서 200개 이상의 부품을 수입한 후 27개 이상의 복잡한 공정을 수행하여 기어박스와 모터 서브어셈블리를 조립하고 최종 기어 모터를 생산함. 이때, 전체 공정은 약 2시간이 소요되며, 관련 노동자들은 조립 숙련도 향상을 위한 추가 훈련을 이수함

판정 조립 공정이 복잡하고 외국산 부품들이 정체성을 상실했으므로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사례 미완성 우편 요금계기 생산을 위한 주요 서브어셈블리 중 하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었으나, 나머지 서브어셈블리들은 중국에서 제조되었고, 이들 서브어셈블리를 연결하여 최종 조립하는 과정 역시 중국에서 이루어짐

판정 중국에서 조립 공정뿐만 아니라 일부 서브어셈블리 또한 제조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에서 행해진 공정이 충분히 광범위하며 복잡한 것으로 판정하여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함

판정 결과

▣ 본 제품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부품이 멕시코에서 복잡한 가공 및 조립 공정을 거쳐 완성됨

- 가공에는 사출성형, 납땜, 열·압력으로 결합, 기계 가공, 압착 고정 등 복합적인 공정이 수행됨
- 전체 조립은 단순한 부품 조합을 넘어 다단계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각 부품은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새로운 상품(펌프)으로 전환됨
- 따라서 멕시코 내 조립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함

결론

- ✓ 멕시코에서 내 조립 공정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으므로 해당 세정 펌프의 원산지는 멕시코임
- ✓ 따라서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③ 시사점

- 수입된 여러 부품들은 멕시코에서 부품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구성요소로 통합되어,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었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간주됨
- 따라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301조 무역제재조치는 적용되지 않음

④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3866 (2020.02.13.), <https://rulings.cbp.gov/ruling/H303866>
- CBP Ruling HQ H282391 (2017.03.16.), <https://rulings.cbp.gov/ruling/H282391>
-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52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2C+69+CCPA+151+%281982%29>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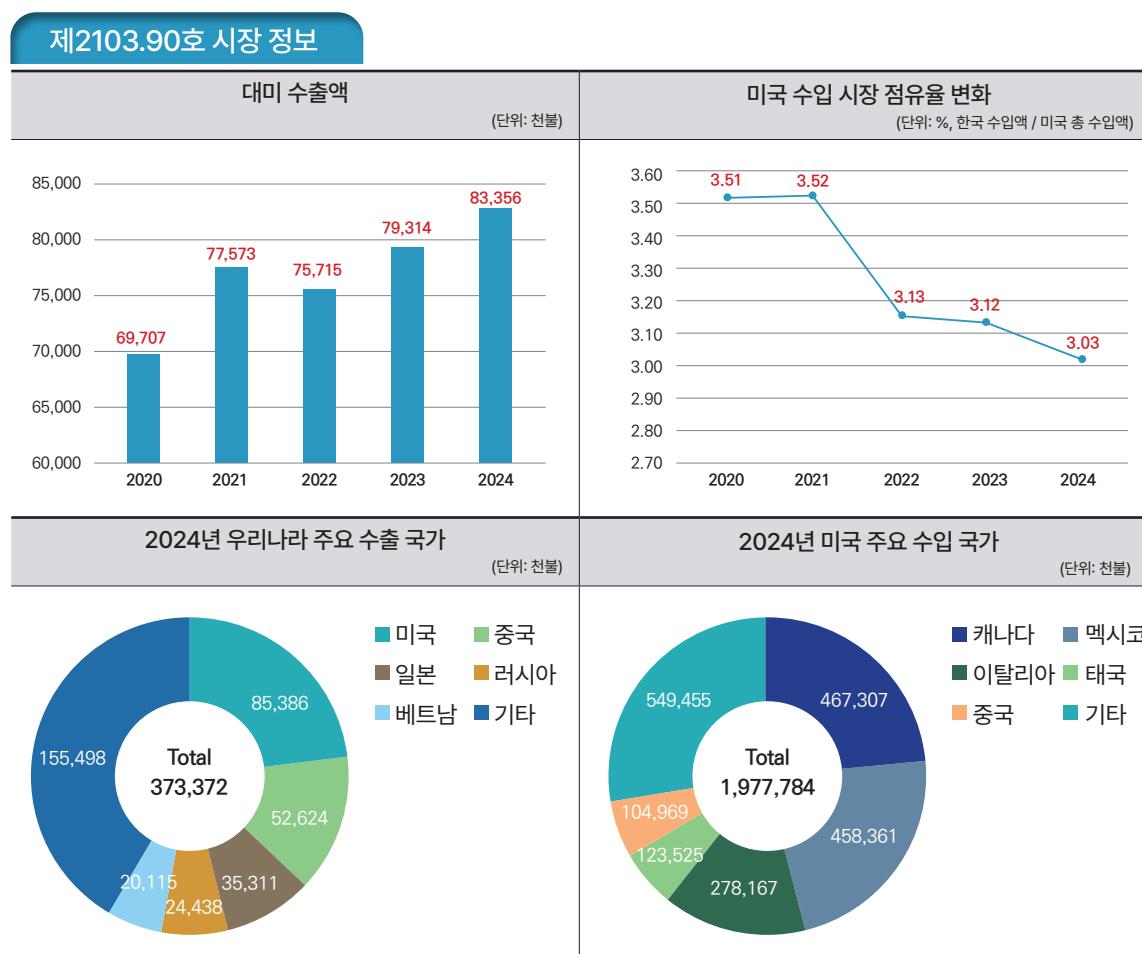
시즈닝 솔트

요약

사례명	시즈닝 솔트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11655 (2020.05.22.)
사실관계	후추, 강황, 마늘 등 여러 국가의 원재료가 인도로 수입되어 인도산 소금, 설탕 등과 함께 혼합 및 포장된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인도에서의 혼합 과정으로 인해 각 원재료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새로운 단일 제품으로 변형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하며,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인도임</p>
근거법령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2103.9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7.5% or 30.5¢/kg + 6.4%
	한-미 FTA 협정세율	0~3%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례명 [시즈닝 솔트]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11655 (2020.05.22.)

사실관계

요청자 Dollar General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즈닝 솔트 (조미 소금)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금 (62%) – 인도산 설탕 (16%) – 인도산 파프리카 (7%) – 인도, 중국, 스페인, 멕시코산 양파 (4%) – 인도, 이집트산 강황 (4%) – 인도, 미얀마, 에티오피아산 마늘 (3%) – 인도, 중국산 흑후추 (2%) –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브라질,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에콰도르산 옥수수 전분 (2%) – 인도산 이산화규소 (1%) – 인도산
완제품 HTS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03.90.7400 (HTSUS chapter 21 note 4에 규정된 수량 한도 내 수입 시) 2103.90.7800 (수량 한도 초과 시)

제조공정



01

원재료 인도 수입



02

재료 혼합



03

용기 포장



04

미국 수출

상세공정

- 다양한 원산지의 원재료를 인도로 수입
- 인도에서 모든 재료를 혼합
- 혼합물을 8온스 용기에 소매 포장
- 완제품 상태로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CBP 『19 C.F.R. § 134』 규정은 『19 U.S.C. § 1304』의 원산지표시 요구사항과 예외를 규정하며,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의 결정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2, 681 F. 2d 778 (1982)*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2007)*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판정 결과

- ▣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원료들이 인도에서 혼합되어 최종 제품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각각의 성분은 정체성을 잃고, 단일 조미 소금이라는 새로운 제품으로 변형됨
 - 따라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으며, 이 제품의 원산지는 인도로 판정됨
 - 또한, 신청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개별 포장에 "Manufactured in the state of Tamilnadu in India"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표시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됨

기타 의견

- ▣ 해당 제품은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42 U.S.C. § 262)』의 적용 대상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기 권함

결론

- ✓ 인도에서 수행된 혼합 및 소매 포장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인도로 판정됨

 **III 시사점**

- 조미 소금은 인도에서의 혼합 및 가공 과정을 통해 별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단일한 식품으로의 실질적 변형을 거친 제품으로 판단되므로, 원산지를 인도로 판정함
- 여러 원재료를 혼합하여 만들어진 식품류의 경우, 개별 원재료들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새로운 제품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가 원산지판정에 중요한 요소임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11655 (2020.05.22.), <https://rulings.cbp.gov/ruling/N311655>
- CBP Ruling (HQ) W968434 (2007), <https://rulings.cbp.gov/ruling/W96843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2C+69+CCPA+151+%281982%29>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o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3

냉동 비건 베이컨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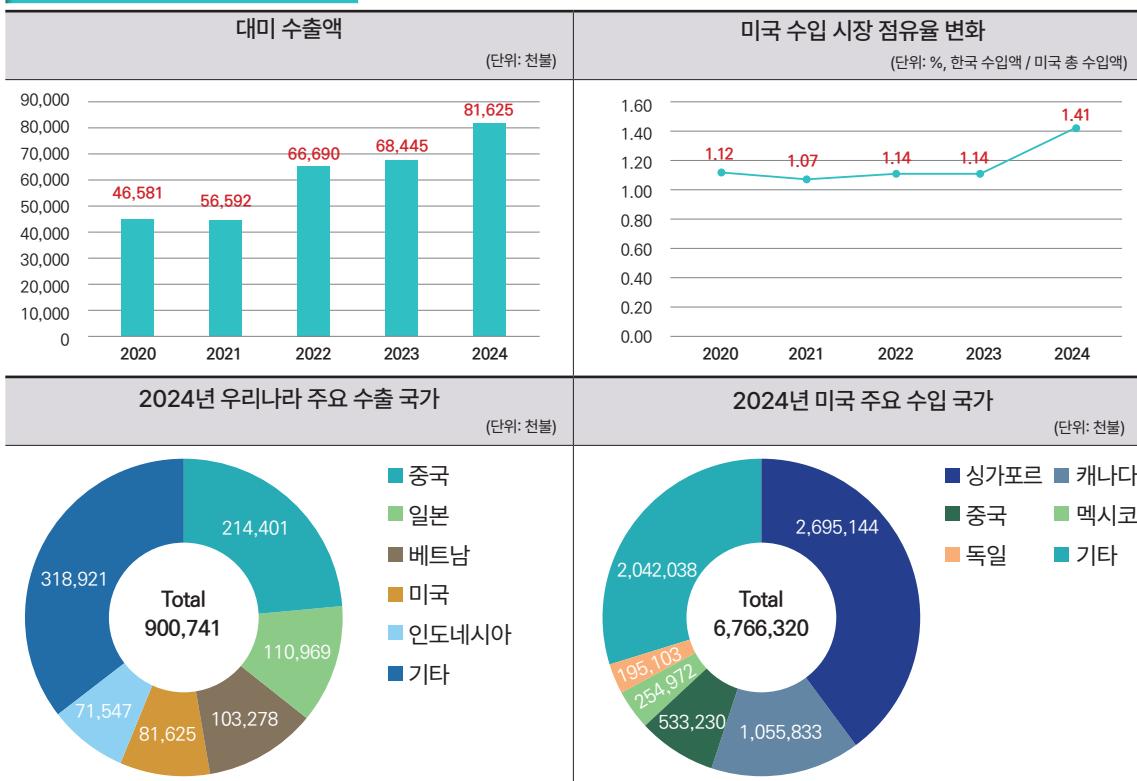
사례명	냉동 비건 베이컨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12216 (2020.06.15.)
사실관계	대두 단백, 옥수수 전분, 효모 추출물 등 여러 국가의 원재료가 대만으로 수입되어 대만산 대두 단백, 대두유 등과 함께 혼합, 가열, 절단, 냉동 및 포장된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대만에서의 공정(혼합, 가열, 절단, 냉동 등)으로 인해 각 원재료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새로운 단일 제품으로 변형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하며,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임</p>
근거법령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2106.9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30%
	미국 기본세율
	0~10% or 종량세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p>1.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제2009호 및 제22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p>2.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주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p>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및 제2009호의 것 및 제2202.90호의 혼합주스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p>나. 제21류 내의 다른 소호와 제2009호에 해당하는 재료, 제2202.90호의 혼합주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과실·채소 주스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 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strength) 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의 6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p>3. 제2106.90호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3호부터 제220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생산된 것</p> <p>4. 제2106.90호의 당시럽: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p>5. 제2106.90호의 것으로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p>6. 제2106.90호의 젤라틴으로 포장한 과실로 과실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p>7. 제2106.90호의 인삼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p>8.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p>

제2106.9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례명 [냉동 비건 베이컨]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12216 (2020.06.15.)

사실관계

요청자 Ice Box Foods Inc., CA. (대리인: John A. Steer Company)

제품명	• 냉동 비건 베이컨 (Frozen Vegan Bacon)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약 54% • 대두유: 17% (대만산) • 소금: 1% (대만산) • 기타 극소량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모 추출물 (프랑스산) - 설탕 (대만산) - 천연 고기향 및 훈제 향료 (독일, 미국, 프랑스산) - 식물 추출물 (캐나다산) - 프로테아제 (독일산) - 착색료 (일본, 독일, 인도산)
완제품 HTSUS	• 2106.90.9895

제조공정



- 상세공정
1. 대만에서 대두 단백 세척, 여과 및 탈수
 2. 기타 성분(대두유, 옥수수 전분, 식물성 단백질 및 기타 첨가물)과 함께 혼합
 3. 모양 성형 및 90°C에서 3.5시간 조리
 4. 절단(슬라이스) 및 소비자 요청 사양에 따라 유닛 포장
 5. -18°C에서 급속냉동
 6. 소매용 플라스틱 백(2.59kg x 12개)에 포장돼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CBP 『19 C.F.R. § 134』 규정은 『19 U.S.C. § 1304』의 원산지표시 요구사항과 예외를 규정하며,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의 결정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2, 681 F. 2d 778 (1982)*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2007)*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판정 결과

- ▣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원료들이 대만에서 혼합, 성형, 조리, 절단, 포장 등을 통해 최종 제품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각각의 성분은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조제품으로 변형됨
 - 다양한 성분이 단순 혼합된 것이 아니라, 열처리 및 성형을 거쳐 일관된 형태와 용도(베이컨 대체 식품)를 가진 새로운 제품으로 재구성됨
 - 이에 따라 본 제품은 대만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원산지는 대만임

기타 의견

- ▣ 해당 제품은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42 U.S.C. § 262)』의 적용 대상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기 권함

결론

- ✓ CBP는 최종 제품이 대만에서 다양한 외국산 원재료를 혼합·가공하여 제조되었으며, 제조공정 중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판정함

 시사점

- 여러 원재료를 혼합하여 만들어진 식품류의 경우, 개별 원재료들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새로운 제품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가 원산지판정에 중요한 요소임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12216 (2020.06.15.), <https://rulings.cbp.gov/ruling/N312216>
- CBP Ruling (HQ) W968434 (2007), <https://rulings.cbp.gov/ruling/W96843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2C+69+CCPA+151+%281982%29>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

case
4

참치 대용 식물성 단백질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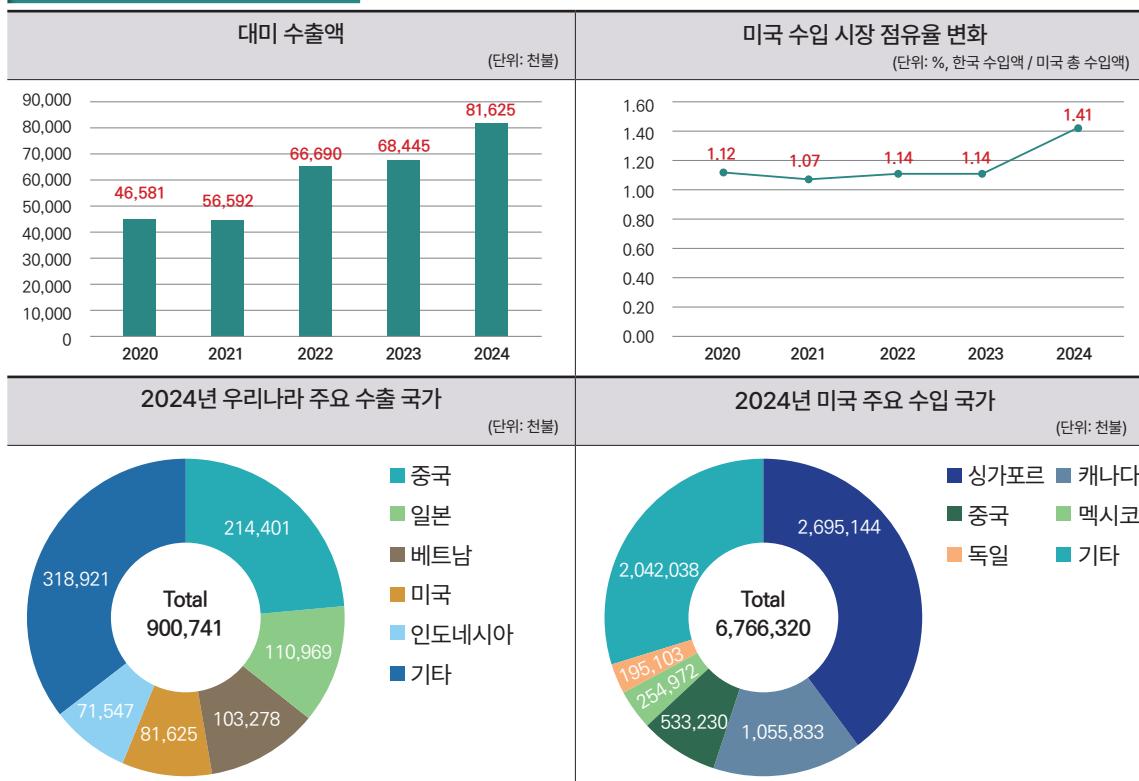
사례명	참치 대용 식물성 단백질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16778 (2021.02.03.)
사실관계	미국산 대두 단백 농축물을 태국으로 수입한 후 함침, 압착, 절단, 혼합 등의 공정을 거쳐 완성된 참치 대용 식물성 단백질을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태국에서 수행된 공정(함침, 압착, 절단, 혼합 등) 이후에도 원재료인 미국산 대두 단백 농축물의 본질적 성질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태국에서의 실질적 변형은 인정되지 않으며,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미국으로 간주 됨</p>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2106.9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30%
	미국 기본세율
	0~10% or 종량세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p>1.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제2009호 및 제22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p>2.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주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p>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및 제2009호의 것 및 제2202.90호의 혼합주스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p>나. 제21류 내의 다른 소호와 제2009호에 해당하는 재료, 제2202.90호의 혼합주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과실·채소 주스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strength) 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의 6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p> <p>3. 제2106.90호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3호부터 제220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생산된 것</p> <p>4. 제2106.90호의 당시럽: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p>5. 제2106.90호의 것으로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p>6. 제2106.90호의 젤라틴으로 포장한 과실로 과실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p>7. 제2106.90호의 인삼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p>8.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p>

제2106.9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례명 [참치 대용 식물성 단백질]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16778 (2021.02.03.)

사실관계

요청자 Tri-Union Seafoods LLC (대리인: American Shipping Co. Inc.)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몬 & 페퍼 식물성 단백질 스프링워터 식물성 단백질 칠리 & 갈릭 식물성 단백질 <p>☞ 각 제품은 수화(hydrated)된 대두 단백 농축물이 약 65~66%를 차지하며, 해당 농축물의 건조 기준 단백질 함량은 약 22%</p>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화(hydrated)된 대두 단백 농축물 기타: 물, 해바라기유, 소금, 레몬 농축액, 후추, 발효 야채 분말, 레몬 오일 향료, 스프링 워터, 발효 야채당 분말, 해바라기유, 레드 칠리, 레드 스퍼 페퍼, 마늘, 파프리카 올레오레진 등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샐러드, 샌드위치, 샐러드 토피 등에 활용되는 참치 대체식품
완제품 HTS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06.90.9898

제조공정



상세공정

미국

- 대두를 추출 가공하여 대두 단백 농축물(textured soy protein concentrate) 제조
- 대두 단백, 밀 글루텐, 밀 전분 등 원재료를 적절한 비율로 계량하여 균질한 혼합물로 혼합
- 조각 형태로 절단 및 건조한 후 태국으로 수출

태국

- 함침(soaking), 압착(pressing), 절단(cutting) 후 조미료 및 향료(flavoring)와 혼합
- 통조림 캔에 포장(142g 단위 소매용) 후 완제품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관련 법령 및 분석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628 F. Supp. 978 (Ct. Int'l Trade 1986)

- 본 사례의 판정을 위해 CBP는 HQ 967925 및 NY I89834를 인용

-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967925 (2006)*

- | | |
|----|--|
| 사례 | 스페인에서 미국산 쌀을 수입하여 스페인산 쌀, 물, 해바라기유, 소금, 대두 레시틴 등과 혼합한 후 최종 제품인 쌀 혼합물을 미국으로 수출 |
| 판정 | 스페인에서의 공정으로 인해 미국산 쌀의 본질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았으며, 스페인으로 수입될 시점과 미국으로 수출되는 시점에서 여전히 모두 쌀이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 |

-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I89834 (2003)*

- | | |
|----|---|
| 사례 | 미국에서 버섯(중국, 조지아, 캐나다 또는 미국산), 허브 및 건조 채소(터키, 모로코, 이스라엘, 크로아티아, 이집트, 스페인 또는 미국산) 등을 수입하여 건조 버섯과 여러 원재료가 혼합된 조제식료품을 생산함. 이 과정에서 혼합 및 소매 포장 외에 별도의 가공은 수행되지 않음 |
| 판정 | 단순 혼합 및 소매 포장만으로는 수입된 버섯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판정 결과

- ▣ 중국에서 수행된 공정(함침, 압착, 절단, 혼합 등) 이후에도 원재료인 미국산 대두 단백 농축물의 본질적 성질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태국에서의 실질적 변형은 인정되지 않으며,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미국으로 간주 됨

기타 의견

- ▣ 해당 제품은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42 U.S.C. § 262)』의 적용 대상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길 권함

결론

- ✓ 판정서에서는 본 제품이 태국에서 수분 함침, 압착, 조미 및 통조림 가공을 거쳤더라도, 이러한 공정이 제품의 본질적인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 따라서 CBP는 이 제품의 원산지를 여전히 미국으로 판정함

③ 시사점

- 원재료의 정체성을 변형시키지 않는 단순한 압착, 절단, 혼합 등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판정됨

④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16778 (2021.02.03.), <https://rulings.cbp.gov/ruling/N316778>
- CBP Ruling HQ 967925 (2006), <https://rulings.cbp.gov/ruling/967925>
- CBP Ruling NY I89834 (2003), <https://rulings.cbp.gov/ruling/I8983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5

대추야자 설탕 분말

요약

사례명	대추야자 설탕 분말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5291 (2021.03.09.)
사실관계	<p>시나리오 1 튀니지에서 재배한 생대추야자를 미국으로 수입하여 분쇄, 체질, 금속검사, 포장 등의 공정을 통해 대추야자 설탕 분말을 생산하고, 이후 벌크 포장하여 캐나다로 수출한 뒤 소매 포장하여 일부를 미국으로 수입</p> <p>시나리오 2 튀니지에서 재배한 생대추야자를 튀니지에서 대추야자 설탕 분말로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고, 이후 그대로 캐나다로 수출하여 소매 포장한 뒤 일부를 미국으로 수입</p>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시나리오 1 미국에서의 분쇄, 체질, 금속검사, 포장은 대추야자를 상업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상품인 대추야자 설탕 분말로 전환시키므로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p> <p>시나리오 2 튀니지에서 대추야자 설탕 분말로 완전히 가공되므로 튀니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p>
근거법령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¹⁾

사례명 [대추야자 설탕 분말]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5291 (2021.03.09.)

사실관계

요청자 Liva Foods, Inc. (대리인: Welke Customs Brokers)

제품명	• 대추야자 설탕 분말 (Ground Date Sugar Powder)
구성	• 100% 유기농 생대추야자 (튀니지산)
제품	• 일반 감미료 또는 설탕 대체재
원재료 HTSUS	• 생대추야자 (0804.10.40)
완제품 HTSUS	• 대추야자 설탕 분말 (1106.30.40)

제조공정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1) 대미 수출량이 미미하여 품목개요 정보 미제공

상세공정

시나리오 1

1. 튜니지에서 생대추야자 재배
2. 검사, 씨 제거, 세척, 자연건조 후 HTSUS 0804.10.40으로 미국 수입
3. 미국에서 미세 분말로 분쇄,マイ크론 체를 통한 체질, 금속검출기 통과 실시
4. 22kg 벌크 폴리프로필렌 백으로 포장
5. 캐나다로 수출
6. 캐나다에서 캐나다산 포장 자재를 사용해 소매용 재포장 수행
7. 일부 제품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재수입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1의 1~4를 튜니지에서 수행하여 HTSUS 1106.30.40으로 미국 수입
- 미국에서 해당 제품을 그대로 캐나다로 수출하여 캐나다산 자재로 소매용 포장
- 일부 제품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재수입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741 F.2d 1368, 1372 (Fed. Cir. 1984)

- 반면,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순한 제조 또는 결합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per curiam, 702 F.2d 1022 (Fed. Cir. 1983)

- 완성된 신발 갑피(upper)를 신발의 밑창(sole)에 부착하는 것은 갑피 자체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참고 판례: *Nat'l Juice Prods. Ass'n v. United States*, 10 CIT 48, 628 F. Supp. 978 (1986)

-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을 가공하여 냉동 오렌지 농축액 및 재구성 오렌지 주스를 생산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음

관련 법령 및 분석

- CBP는 본 사안의 판정을 위해 Koru North Am(1988) 사건과 HQ 733814를 인용함

❖ 참고 판례: *Koru North Am. v. United States, 12 CIT 1120, 701 F. Supp. 229 (1988)*

사례 뉴질랜드산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생선이 한국으로 수입되어 해동, 껌질 제거, 뼈 제거, 다듬기, 유약 처리, 재냉동,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냉동 생선 필레로 가공됨

판정 생선이 한국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전체 생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한국에서 수출될 시점에는 더 이상 원형의 특성을 지니지 않았으며, 추가적으로 지방층과 불순물이 제거되고 저장성 향상 및 부패 방지 처리 등이 수행되었으므로, 상업적 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물품으로 변형된 것으로 판결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3814 (1991)*

사례 생두를 가공하여 인스턴트 커피를 제조

판정 생두를 가공하여 인스턴트 커피를 제조하는 것은 생두의 본질적 형태와 성질을 변화시키고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인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어내므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됨

판정 결과

- 시나리오 1** 미국에서의 분쇄, 체질, 금속검사, 포장은 대추야자를 상업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상품인 대추야자 설탕 분말로 전환시키므로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 시나리오 2** 튜니지에서 대추야자 설탕 분말로 완전히 가공되므로 튜니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 캐나다에서의 소매 포장은 단순 공정에 불과하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음

결론

- ✓ 시나리오 1에 따른 원산지는 미국, 시나리오 2는 튜니지임

II 시사점

-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5291 (2021.03.09.), <https://rulings.cbp.gov/ruling/H315291>
- CBP Ruling HQ 733814 (1991), <https://rulings.cbp.gov/ruling/73381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Nat'l Juice Prods. Ass'n v. United States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Koru North Am. v. United States (198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474459/koru-north-america-v-united-states/?q=Koru+North+Am.+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6

가공된 황다랑어

요약

사례명	가공된 황다랑어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0603 (2021.08.16)
사실관계	중국 국적 선박에 의해 어획된 황다랑어가 일본으로 수출되어, 꼬리 및 머리 제거, 반으로 절단, 지느러미 뼈 및 척추 제거, 껍질 및 검은 살 제거, 뼈와 혈관 제거 등의 공정을 거쳐 스시용 참치로 가공된 후 미국에 수입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중국 국적 선박에 의해 어획된 황다랑어는 일본에서 총 18단계의 가공 공정을 거쳐 별도의 새로운 상업적 제품인 스시용 참치로 전환되었으므로 일본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p>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²⁾

사례명 [가공된 황다랑어]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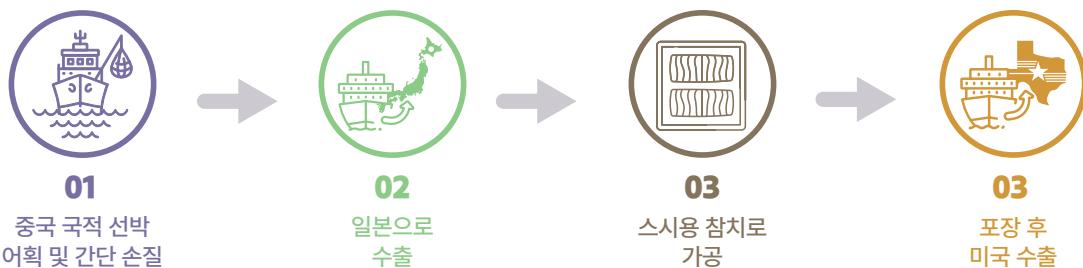
사례번호 NY N320603 (2021.08.16.)

사실관계

요청자 Sojitz Corporation of America

제품명	• 가공된 황다랑어
제품	구성
용도	• 스시용

제조공정



상세공정 1. 중국 국적 선박(Chinese-flagged vessels)에 의해 어획

2. 어획된 황다랑어는 선상에서 아가미 및 내장 제거

3. 일본으로 수출

4. 일본 내 제조공정:

- 꼬리 및 머리 제거

- 생선을 절단하여 두 조각으로 분리

- 지느러미 뼈와 척추 제거

- 껍질 및 피부 아래에 남아 있는 어두운 살코기 제거

- 배살 부위를 잘라낸 후 잔여 가시, 혈관, 혈흔 제거

- 플라스틱 백에 포장 후, 스티로폼 또는 종이 상자에 담겨 스시용 참치로 미국 수출

2)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Uniroyal*)

- 실질적 변형 여부에 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2007)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F.2d 1201 (Fed. Cir. 1993)

- CBP는 해당 사례의 원산지판정을 위해 *Koru North Am*(1988) 사건을 인용

❖ 참고 판례: *Koru North Am. v. United States*, 12 CIT 1120, 701 F. Supp. 229 (1988)

사례 뉴질랜드산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생선이 한국으로 수입되어 해동, 껍질 제거, 뼈 제거, 다듬기, 유약 처리, 재냉동,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냉동 생선 필레로 가공됨

판결 생선이 한국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전체 생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한국에서 수출될 시점에는 더 이상 원형의 특성을 지니지 않았으며, 추가적으로 지방층과 불순물이 제거되고 저장성 향상 및 부폐 방지 처리 등이 수행되었으므로, 상업적 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물품으로 변형된 것으로 판결함

판정 결과

☞ 중국 국적 선박에 의해 어획된 황다랑어는 일본에서 총 18단계의 가공 공정을 거쳐 별도의 새로운 상업적 제품인 스시용 참치로 전환되었으므로 일본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기타 의견

☞ 해당 제품은 USDA AMS(Agriculture Marketing Service)이 시행하는 의무적 원산지표시 제도 (COOL: Mandatory Country of Origin Labeling)의 적용 대상이므로 해당 기관에서 관련 추가 지침을 확인해야 함

결론

- ✓ 일본에서 수행된 18개 가공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인 스시용 참치의 원산지는 일본으로 판정됨

II 시사점

- 해당 건에서 '일본산'으로 판정된 핵심은 제품이 최종적으로 '스시용 참치'라는 독립적 상업상품으로 변해 정체성이 명확히 달라졌다는 점에 있음
- CBP는 판정 시 부수적으로 USDA와 같은 유관기관의 규제, 추가적인 의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0603 (2021.08.16.), <https://rulings.cbp.gov/ruling/N320603>
- CBP Ruling HQ W968434 (2007), <https://rulings.cbp.gov/ruling/W96843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Koru North Am. v. United States (198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474459/koru-north-america-v-united-states/?q=Koru+North+Am.+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7

크릴오일 구미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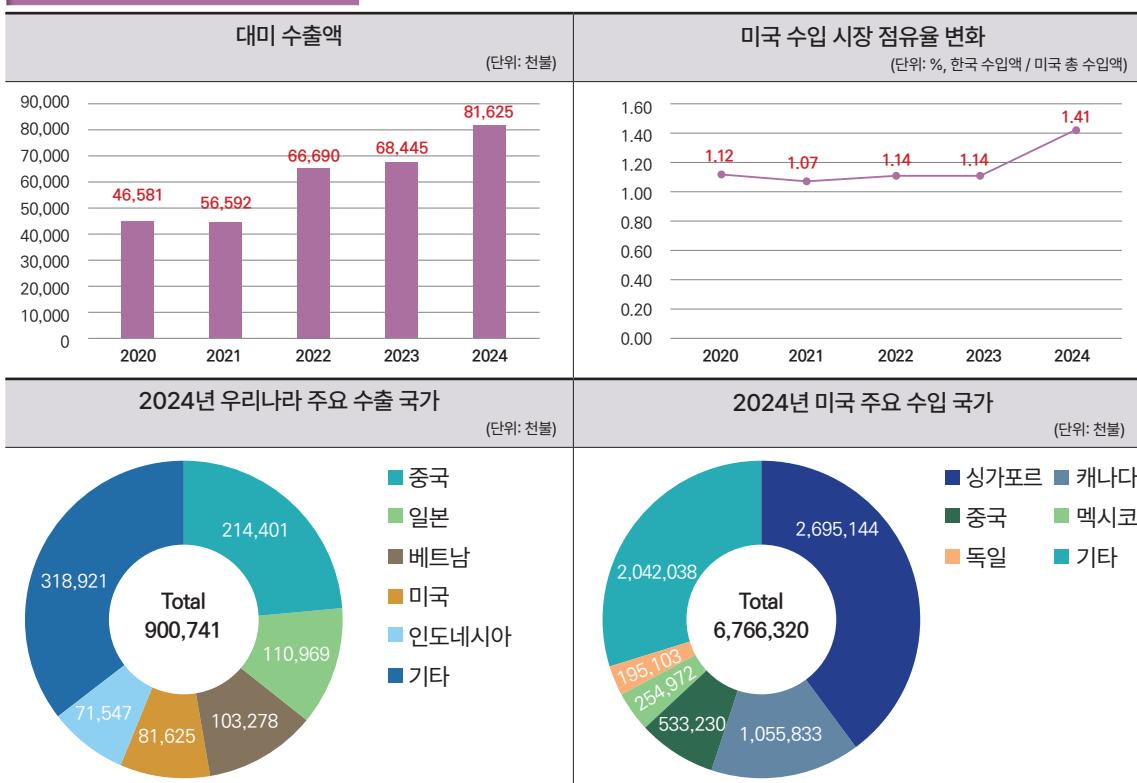
사례명	크릴오일 구미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3535 (2022.02.02)
사실관계	중국에서 여러 국가에서 수입한 원재료(크릴오일, 감미료, 향료 등)를 혼합, 가열, 성형, 건조, 코팅 하여 생산한 크릴오일 구미를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중국에서 수행된 제조공정은 원재료(크릴오일)의 명칭·성질·용도를 변경하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p>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2106.9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30%
	미국 기본세율	0~10% or 종량세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1.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제2009호 및 제22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주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및 제2009호의 것 및 제2202.90호의 혼합주스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나. 제21류 내의 다른 소호와 제2009호에 해당하는 재료, 제2202.90호의 혼합주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과실·채소 주스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strength) 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의 6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 제2106.90호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3호부터 제220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에서 생산된 것 4. 제2106.90호의 당시럽: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5. 제2106.90호의 것으로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6. 제2106.90호의 젤라틴으로 포장한 과실로 과실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7. 제2106.90호의 인삼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된 것 8.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례명 [크릴오일 구미]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3535 (2022.02.02.)

사실관계

요청자 Sirio Nutrition Co., Ltd.

제품명	• Krill Oil Gummy (Sugar Coated)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릴오일, 천연 레몬향, 천연 자몽향 (미국산) • 포도당 시럽, 자당, 물, 캐스터 설탕, 젤라틴, 오렌지 주스 농축액, 사과 주스 농축액, 구연산, 비타민 C, 젖산, 천연 오렌지 향 2종, 레시틴 등 (중국산) • 밀 전분, 아카시아 검 (프랑스산) • 흑당근 주스 농축액 (덴마크산)
제품	
용도	• 브랜드/도매업체 판매용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HTS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06.90.9500 (HTSUS Chapter 17 note 8에 명시된 한도 수량 이내) • 2106.90.9700 (HTSUS Chapter 17 note 8에 명시된 한도 수량 초과) • 2106.90.9897 (소매용 포장으로 수입되는 경우)

제조공정



- 중국 상세공정
1. 젤라틴을 액화하여 시럽에첨가
 2. 크릴 오일 및 나머지 원료들과 함께 혼합
 3. 액상 혼합물을 몰드에 부어 적정 수분 함량에 도달할 때까지 건조
 4. 건조된 구미를 캐스터 설탕으로 코팅
 5. 밀봉된 용기(비소매용)에 포장
 6.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경미한 공정(minor process)에 불과하여 해당 물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628 F. Supp. 978 (Ct. Int'l Trade 1986)

판정 결과

- ☞ 미국산 크릴오일은 중국에서의 가공을 통해 '크릴오일 구미'라는 명칭·성질·용도가 변화된 전혀 다른 형태의 상업적 제품으로 생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크릴오일의 본질적 특성이 변경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기타 의견

- ☞ 해당 제품은 HTSUS, Chapter 99, Subchapter III, Note 20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므로 수입 시 기본 세번 외에 Chapter 99에 따른 세 번인 9903.88.15도 함께 신고해야 함
 ☞ 해당 제품은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42 U.S.C. § 262)』의 적용 대상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기 권함

결론

- ✓ 크릴오일을 포함한 여러 재료가 중국에서 가공되어 상업적 완제품으로 제조되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됨

③ 시사점

-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④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3535 (2022.02.02.), <https://rulings.cbp.gov/ruling/N323535>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2C+207+U.S.+556+%281908%29>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q=Uniroyal+Inc.+v.+United+States%2C+542+F.+Supp.+1026+%281982%29>
-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8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

요약

사례명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5562 (2022.5.5)
사실관계	말레이시아산 PCBA, 중국산 유리 패널 서브어셈블리, 기타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데코급 A 플라스틱을 일본으로 수입하여 일본산 BLU 서브 어셈블리와 조립해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를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해당 최종 제품의 판정에 있어 CBP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PCBA가 완제품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구성요소라고 판단하였으며, PCBA에 의해 제품의 최종 용도가 사실상 사전에 결정 되므로 말레이시아가 원산지인 것으로 판정</p>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³⁾

사례명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5562 (2022.05.05.)

사실관계

요청자 Tianma America, Inc. (대리인: Miller, Canfield, Paddock and Stone, PLC)

제품명	• 자동차용 통합 센터 스택 어셈블리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BA (말레이시아산) • BLU 서브 어셈블리 (일본산) • 유리 패널 서브어셈블리 (중국산) • 데코급 A 플라스틱 (기타 국가산)
용도	•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공조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제조공정



- 상세공정
1. PCBA, 유리 패널 서브어셈블리, 데코급 A 플라스틱을 일본으로 수입
 2. 일본산 BLU 서브 어셈블리와 수입 부품을 반자동 공정을 통해 조립
 3. 외형·기능 검사
 4. 완성품 미국 수출

3)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수입 후 가공이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 물리적 변형(physical change)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성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226, 542 F. Supp. 1026, 1031,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제품의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서 이미 사전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나아가 조립의 성격을 고려할 경우, 조립이 단순한지 아니면 각 부품이 개별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불가분한 구성 요소가 될 만큼 복잡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됨

판정 결과

▣ 해당 최종 제품의 판정에 있어 CBP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PCBA가 완제품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구성요소라고 판단하였으며, PCBA에 의해 제품의 최종 용도가 사실상 사전에 결정되므로 말레이시아가 원산지인 것으로 판정

- 일본에서 수행된 조립 공정이 제품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추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 조립 공정이 PCBA를 상업적으로 명칭, 성질, 용도 면에서 새롭고 다른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

결론

- ✓ 일본에서의 조립은 추가적 기능만을 부여할 뿐 실질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의 최종 원산지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PCBA가 제조된 말레이시아임

② 시사점

- 특정 부품이 최종 제품의 기능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부품이 생산된 국가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③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5562 (2022.05.05.), <https://rulings.cbp.gov/ruling/N325562>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2C+207+U.S.+556+%281908%29>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q=Uniroyal+Inc.+v.+United+States%2C+542+F.+Sup.+1026+%281982%29>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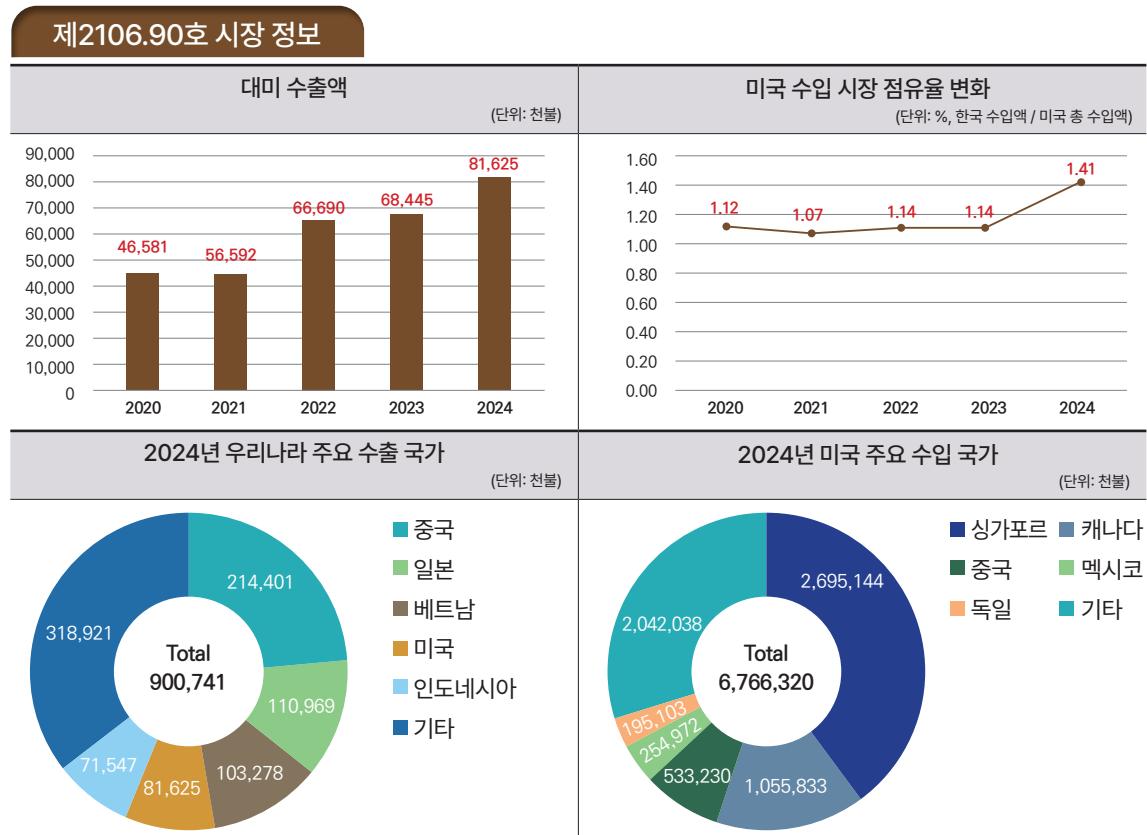
껌

요약

사례명	껌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8304 (2022.10.14)
사실관계	중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스페인, 수단, 브라질산 원료를 이탈리아로 수입하여 혼합, 압출, 적층, 성형, 안정화 등 일련의 가공을 거쳐 껌 제품으로 제조한 후 영국에서 소매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된 원재료(자일리톨, 향료 등)는 이탈리아에서 혼합, 압출, 냉각, 성형, 안정화, 코팅,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기존 원재료와는 명칭, 성질, 용도가 다른 '껌'이라는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며, 원산지는 이탈리아로 판단됨</p>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2106.9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30%
	미국 기본세율
	0~10% or 종량세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한-미 FTA 협정세율
	0%
	1.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제2009호 및 제22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주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및 제2009호의 것 및 제2202.90호의 혼합주스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나. 제21류 내의 다른 소호와 제2009호에 해당하는 재료, 제2202.90호의 혼합주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과실·채소 주스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strength) 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의 6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 제2106.90호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3호부터 제220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에서 생산된 것 4. 제2106.90호의 당시럽: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5. 제2106.90호의 것으로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6. 제2106.90호의 젤라틴으로 포장한 과실로 과실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7. 제2106.90호의 인삼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된 것 8.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례명 [검]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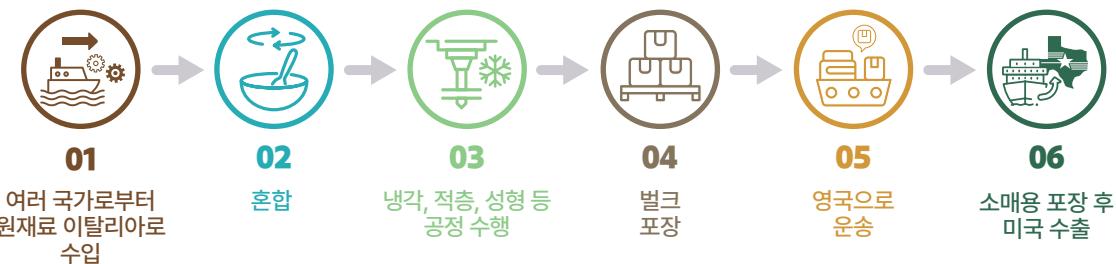
사례번호 NY N328304 (2022.10.14.)

사실관계

요청자 Foodcareplus Logistics NV (대리인: Russell A. Farrow (U.S.) Inc.)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ppermint Flavor Gum ("Peppermint Power") Watermelon Flavor Gum ("Watermelon Wonder") Mint Flavor Gum ("Mighty Mint")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일리톨: 72~75% (중국산) 글리세롤: 2% (인도네시아산) 기타 극소량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스페인산) - 아라비아 검 (수단산) - 스테비아 (중국산) - 카나우바 왁스 (브라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 치클 베이스: 20~21% (멕시코산) 천연 향료: 1~4% (이탈리아산)
완제품 HTSUS	• 2106.90.9985	

제조공정



상세공정

- 다양한 국가산 원재료를 이탈리아로 수입
- 모든 성분을 55°C에서 혼합
- 1차 압출 후, 컨베이어 벨트에서 냉각
- 2차 압출 후, 적층(lamination), 성형(molding) 공정 수행
- 온도 20°C, 습도 50%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셀 안정화(cell stabilization)
- 코팅, 벌크 포장 및 금속 탐지 공정 수행
- 벌크 상태로 영국 소재의 소매 포장업체인 Holland & Barrett으로 운송
- 소매용 포장으로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반면,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628 F. Supp. 978 (Ct. Int'l Trade 1986)

판정 결과

-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된 원재료(자일리톨, 향료 등)는 이탈리아에서 혼합, 압출, 냉각, 성형, 안정화, 코팅,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기존 원재료와는 명칭, 성질, 용도가 다른 '껌'이라는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며, 원산지는 이탈리아로 판단됨

기타 의견

- 해당 제품은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42 U.S.C. § 262)』의 적용 대상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기 권함

결론

- ✓ 다국적 원재료는 이탈리아에서 복합적 공정을 거쳐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이탈리아로 판정됨

III 시사점

-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8304 (2022.10.14.), <https://rulings.cbp.gov/ruling/N32830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10

혼합 감미료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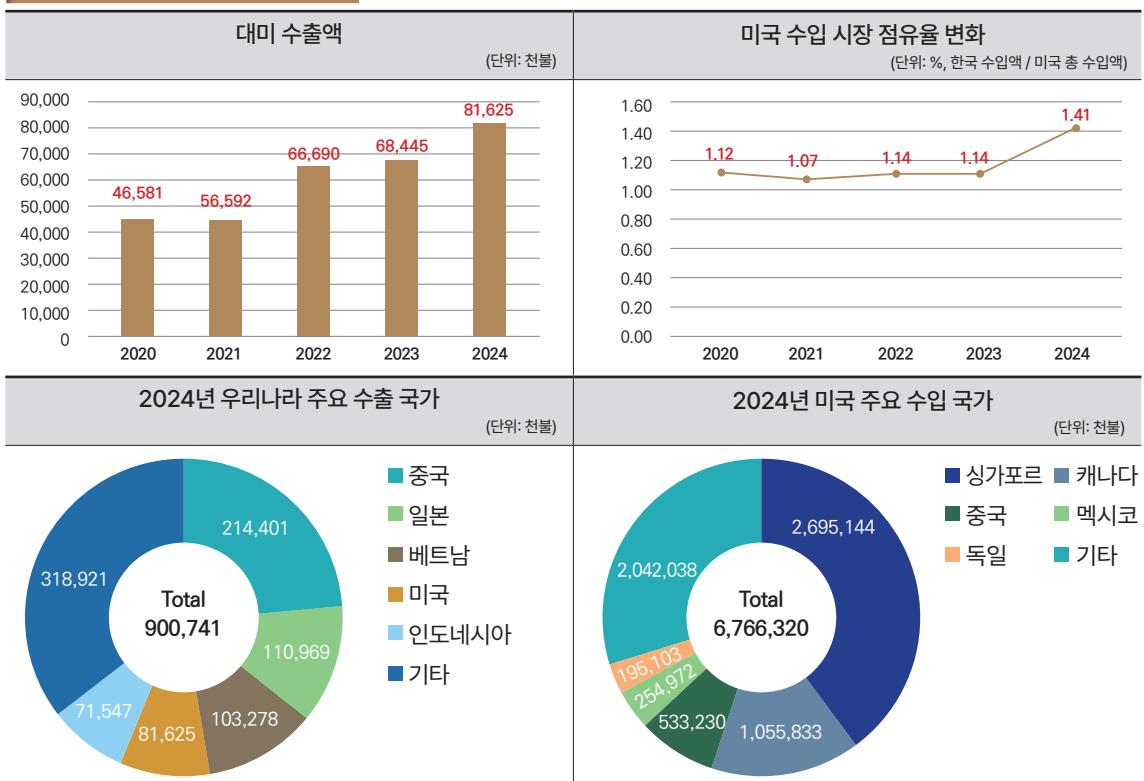
사례명	혼합 감미료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9440 (2022.12.19)
사실관계	미국산 에리트리톨, 중국산 스테비아 등의 원재료를 브라질에서 혼합 및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미국 및 중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브라질에서 계량, 혼합, 건조한 뒤 포장하는 공정만으로 제품의 명칭·성질·용도가 본래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기존 판례 및 판정에서와 같이 단순 작업에 해당하므로 브라질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근거법령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2106.9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30%
	미국 기본세율	0~10% or 종량세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1.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제2009호 및 제22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주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및 제2009호의 것 및 제2202.90호의 혼합주스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나. 제21류 내의 다른 소호와 제2009호에 해당하는 재료, 제2202.90호의 혼합주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과실·채소 주스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strength) 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의 6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 제2106.90호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3호부터 제220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에서 생산된 것 4. 제2106.90호의 당시럽: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5. 제2106.90호의 것으로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6. 제2106.90호의 젤라틴으로 포장한 과실로 과실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7. 제2106.90호의 인삼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된 것 8.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② 판정사례

사례명 [혼합 감미료]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9440 (2022.12.19.)

사실관계

요청자 Univar Solutions USA Inc.

제품	제품명	• 혼합 감미료 (blended sweeteners)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D0123 - Sweetener Blend Natural - 미국산 에리트리톨, 중국산 스테비아 혼합물 • BED0094 - Sweetener Blend Performance - 중국산 수크랄로스, 중국산 아세설팜-K 혼합물
	용도	• 미국 내 식품 또는 음료 제조업체용 원료
	완제품 HTSUS	• 2106.90.9998

제조공정



상세공정

1. 미국 및 중국산 원재료를 브라질로 수입
2. 브라질에서 다음의 공정 수행
 - 각 원재료 계량
 - 건식 블렌더(dry blender)를 이용하여 원료를 균일하게 혼합
3. 폴리에틸렌 백(25kg)에 포장하여 미국 수출 (미국 식품 제조업체에 판매)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CBP『19 C.F.R. § 134』규정은『19 U.S.C. § 1304』의 원산지표시 요구사항과 예외를 규정하며,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의 결정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628 F. Supp. 978
(Ct. Int'l Trade 1986)

- CBP는 혼합(mixing)은 단순 작업에 해당하며, 혼합된 성분이 원재료와 다른 명칭, 성질, 및 용도를 갖는 새로운 상업적 물품을 생성하지 않는 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유지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34949 (2013)*

사례 브라질산 사탕수수 설탕과 미국산 옥수수 시럽을 혼합하여 혼합 시럽 생산

판정 원재료와 최종제품이 여전히 김미료로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아님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088799 (1991)*

사례 미국산 코코아 파우더와 외국산 설탕을 캐나다에서 혼합

판정 단순 혼합으로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 불인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746 (2019)*

사례 튀니지와 스페인산 올리브유를 스페인에서 혼합 및 정제

판정 단순 혼합으로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 불인정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v. United States*, 628 F. Supp. 978 (1986)

사례 수입 오렌지 농축액과 미국산 농축액을 혼합

판결 단순 혼합으로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 불인정

판정 결과

▣ 미국 및 중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브라질에서 계량, 혼합, 건조한 뒤 포장하는 공정만으로 제품의 명칭·성질·용도가 본래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기준 판례 및 판정에서와 같이 단순 작업에 해당하므로 브라질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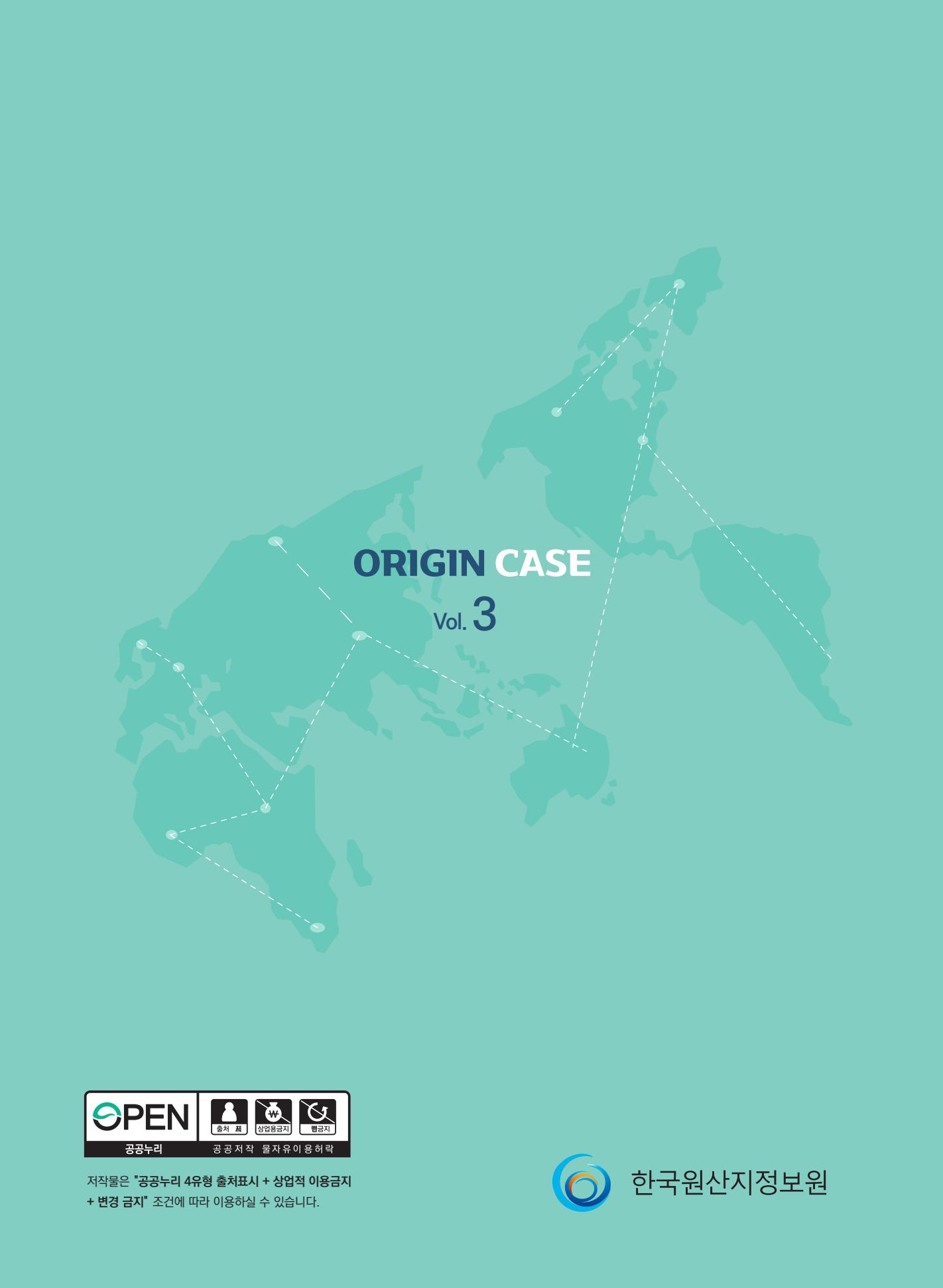
- ✓ 브라질에서의 혼합 공정은 단순 작업에 해당하며, 실질적 변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 따라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원재료 각 성분의 원산지인 미국 및 중국으로 표시

(III) 시사점

- 원재료를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혼합 공정은 단순 작업으로 판단되어 실질적 변형을 충족할 수 없음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9440 (2022.12.19.), <https://rulings.cbp.gov/ruling/N329440>
- CBP Ruling HQ H234949 (2013.04.19.), <https://rulings.cbp.gov/ruling/H234949>
- CBP Ruling HQ 088799 (1991.11.20.), <https://rulings.cbp.gov/ruling/08879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ORIGIN CASE

Vol. 3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